#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(진선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86 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진선미·윤종군·임오경

이학영 • 한병도 • 남인순

한정애 · 김준혁 · 임호선

이광희 · 김문수 · 정태호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

최근 죽음에 얽힌 다양한 이슈가 확대, 재생산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·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. 또한 국민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해 당함.

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들에서는 초기부터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가 검시 과정에 참여하여 과학적·전문적인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. 또한 법의관의 자격 요 건에 대해서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 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, 법의관의 양성과 검시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

음.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·전문적으로 밝혀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 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·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검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·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행정안전부장관은 변사체의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·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법의관은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·치과의사· 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,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 추어야 함(안 제6조).
- 라. 법의관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법의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마.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시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

관련 자료를 송부하도록 함(안 제9조).

- 바. 법의관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의 열람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행정기관·단체 등에는 검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.
- 사. 법의관은 변사체의 검시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고, 법의관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함(안 제12조 및 제13조).
- 아.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·단체 및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.

#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검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·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변사체"(變死體)란 범죄와 관련되었거나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시체를 말한다. 다만, 명백한 병사를 제외한 사인이 불분명하거나 사인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시체를 포함한다. 변사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. "검안"(檢案)이란 변사체의 사망원인(이하 "사인"이라 한다)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사체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사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부검"(剖檢)이란 변사체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사체를 해 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검시"(檢屍)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·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.
- 5. "검시업무"란 검시 및 그와 관련하여 사인 등을 서류로 작성하거

- 나 검시결과를 수사기관에 통지하는 등 검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말한다.
- 6. "법의관"(法醫官)이란 이 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검시업 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.
- 7. "검시보조자"(檢屍補助者)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의관의 검시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국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그 사인을 밝히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검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5조(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과학적·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검시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방향
  - 2. 검시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
  - 3. 검시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·개발
  - 4. 검시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

- 5. 검시업무에 필요한 기반 조성
- 6. 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
- 7. 검시업무 전문인력의 양성
- 8. 그 밖에 검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검시업무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법의관의 자격) 법의관은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  - 1. 병리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전문의 자격 취득
  - 2.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법의학 및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 사
  -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법의학·병리학 또는 해부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
  - 4.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검시 관련 기관
    - •단체 및 대학 등에서 관련 교육과정 수료
- 제7조(법의관의 직무) 법의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- 1. 「형사소송법」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사체의 해부
  - 2. 「형사소송법」 제222조에 따른 변사체의 검안 및 부검

- 3. 「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시체의 해부
- 4.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,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, 군의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사건에서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망자의 유족 또는 관할관청이 요청하는 시체의 해부
- 5. 그 밖에 사인을 밝히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직무
- 제8조(직무의 대행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의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법의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법의관으로 본다.
  - ③ 법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시보조자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직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대행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법의관의 의무 등)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0조제 2항에 따라 변사체가 이동된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서 검시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변사체를 검시한 법의관은 사인, 부검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변사체를 검시한 법의관은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법의관이 즉시 변사체를 검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2호의 직무 중 변사체 검안에 관한 직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. 다만, 대행하는 직무의 범위에 「의료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안서 발급은 포함되지 않는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시업무, 서류의 작성·제출, 통지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수사기관의 협조 등) ① 수사기관은 변사체를 발견하였거나 그소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의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, 사고위험, 수사상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법의관과 협의하여 변사체를 적절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사기관은 변사체가 발견된당시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  - ③ 법의관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의

열람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- 제11조(자료요청) 행정안전부장관은 변사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행정기관·단체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행정기관·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12조(검시 관련 기록의 보존) ① 법의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사체의 검시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검시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, 보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법의관의 독립성 보장)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4조(비밀 누설 금지 등) 이 법에 따라 검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5조(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시 관련 기관·단체 및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의관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관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

-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법의관 양성기관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의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- 3. 그 밖에 법의관 양성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의관 양성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.
- 제17조(청문)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의관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있다.
- 제19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의 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- 제20조(벌칙) ① 제13조를 위반하여 법의관의 직무 수행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21조(과태료)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법의관 양성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 전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### 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의관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른 직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의사는 제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